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공적 부담 규정 (2026 Public Charge Rule) 은 이민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26년 8월

2026년 7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의 신분 조정, 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 및 공공 혜택 수령을 제한하는 연방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라고 불리며, 공식 명칭은 “공적 부담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많은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 부담(Public Charge)”과 “입국 불허(Inadmissibility)”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적 부담”은 생계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1880년대 이래 미국 이민법에는 “언제든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신분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어 왔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입국 허가라고 하며, 따라서 법률상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입국을 거부하는 사유, 즉 “입국 불허 사유”가 됩니다. 미국 정부가 해당 개인이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999년에는 정부의 현금 지원 또는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장기 시설 요양에 “주로 의존”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자 또는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공적 부담”은 1999년 연방 규정에 정의되었으며, 이전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하여 연방 규정을 통해 여러 차례 수정되고 폐기되었습니다. 1999년에 제시된 오랜 정의는 공적 부담을 정부의 현금 지원 또는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장기 시설 요양에 “주로 의존”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새 규정은 무엇입니까?

새 공적 부담 규정은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첫째, 공적 부담에 산입되는 혜택을 판단하던 기존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종전 기준은 공적 부담의 범위를 현금 지원과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장기 의료 요양이라는 두 가지 공공 혜택으로 한정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이를 대체할 새롭고 구체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 둘째, 새 규정은 **SNAP** 혜택을 받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와 같이 가족 구성원이 받은 혜택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 규정에 따라 이민 심사관은 개별 사안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지시받게 됩니다.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추가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공적 부담 규정은 공적 부담 심사가 적용되는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민 심사관은 훨씬 더 많은 혜택의 수령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시받게 되며, 여기에는 신청자 자녀의 혜택 수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던 정의가 폐지된 후 새로운 정의로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별 공적 부담 판단의 불일치가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막론하고 공공 혜택 이용을 위축시키고, 가정이 필수적인 공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규정은 언제 시행됩니까?

새 공적 부담 규정은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됩니다.

새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 **2026년 9월 18일** 또는 그 이후에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자.
- 해당 일자 또는 그 이후에 미국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개인.
-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받은 혜택은 **현행 2022년** 규정에 따라 계속 심사되어야 하나, 미국 시민권·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추가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어떤 혜택이 고려 대상이 됩니까?

이 규정은 어떤 혜택이 고려 대상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 규정은 이민 심사관이 현금 지원 또는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장기 시설 요양이라는 중전의 협소한 범주 대신 “수급 자격 심사형 공공 혜택”을 근거로 공적 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 규정이 시행된 후 **USCIS**가 고려할 수 있는 공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 프로그램

-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 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 긴급 식품 지원법에 따른 혜택(**Emergency Food Assistance Act, TEFAP**)
- 아동 및 성인 요양 급식 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P**)
- 인디언 보호구역 식품 배급 프로그램(**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FDIPIR**)

보건 프로그램

-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및 적정부담의료법(**Affordable Care Act**)을 통한 건강 보험
-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

주거 프로그램

- 섹션 8(**Section 8**)과 같은 공공 주택 프로그램
-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

-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 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포함한 기타 세금 관련 현금 혜택

공적 부담 판단 시 개인의 연령, 건강, 가족 상황, 자산·재원 및 재정 상태, 학력 및 기술, 재정정보증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계속 변경되고 있으며 수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 지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적 부담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이 되는 이민 신분은 무엇입니까?

공적 부담은 합법적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가 되는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 (즉,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적 부담은 미국을 **180일** 넘게 떠났다가 재입국하는 합법적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적 부담 심사는 다음에 해당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망명 허가자
- 난민
- 가정 폭력, 인신매매 또는 중범죄의 피해자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 T 비자 소지자 또는 U 비자 소지자)
- 특별 이민 청소년 분류 (**Special Immigrant Juvenile classification, SIJ**)를 받은 아동 또는 청년영주권
- 을 갱신하는 사람

공적 부담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아래 여러 범주의 파생 비자 소지자로서 처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과거의 혜택 수령이 공적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까?

새 정책은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됩니다. 해당 일자 이후에 신청하여 받은 혜택과 계속 이용 중인 혜택만이 공적 부담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현행 **2022년** 바이든 행정부 규정 (**Biden Administration Rule of 2022**)이 적용됩니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부모의 신청서 심사에서 자녀의 혜택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 규정은 **DHS**가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의 혜택 수령과, 해당 부양가족이 혜택을 받던 기간 동안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새 공적 부담 규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은 개인과 가정은 이민 변호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단체 및 법률 단체에 연락하십시오.

뉴욕에서는 다음 번호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 **뉴욕시 시장실 이민사무국 이민 법률 지원 핫라인(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Immigration Legal Support Hotline)** (800) 354-036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Immigration Legal”이라고 말씀하십시오
- **뉴욕주 신규이민자 지원국 핫라인(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 Hotline)**으로 전화하시면 거주지역의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00) 566-7636입니다